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채권자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949, 2022. 11.30

질 의

-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영§19의2①(8))의 손금산입시기

회 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파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
정이 적용됨

서면법인-2180, 2022.08.24

질 의

-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쟁점 주식을 취득한 질의법인
이 창투사로 지위를 전환한 이후 쟁점주식을 양도하
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
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회 신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
이터)의 지위에서 구「조세특례제한법」(2020.2.11. 법
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
호 또는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로 전환한 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
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
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재산세제과-1003, 2022.08.19

질 의

-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
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18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속
인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

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를 근거로 하여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재산-5962, 2023.01.30

■ 질 의

- 법인 아닌 단체의 회원간에 주식공동구매를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종료일에 회원들 각각의 출자금 비율대로 쟁점주식을 배분받는 경우
 - 회원들이 배분받은 주식가액에서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6, 2023.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6, 2023.1.26.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

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사목에 열거된 '폐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법무부가-5, 2023.01.25

■ 질 의

- 납세자는 재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용 폐배터리, 산업용 폐배터리 등을 매입하여 폐배터리를 분해하여 재활용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폐배터리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함

질의

-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